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의2서식] <개정 2012.10.5>

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(www.femis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사업개시 신고(확인)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일

회사명	(사업자등록번호:) (전화번호:)	
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대표자 주소(법인 소재지)		종업원 수
입주(변경) 계약일		
업종 (분류번호)		인·허가 등록 (등록번호)
사업 개시(예 정)일		건축 준공일
규 모	용지 면적(㎡)	건축 연면적(㎡)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관리기관 귀하

첨부서류	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 음
관리기관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 사본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관리기관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주민등록번호: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현장 확인	→	관리대장등록	→	확인서 작성	→	확인서 발급
신고인		관리기관		관리기관		관리기관		관리기관		신고인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 신고를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관리기관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